

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류 안내

서류		발급 기준	세부 사항
필수 사항	신분증 / 인감도장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2020.12.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) ※ 2020.12.21.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※ 재외동포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
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	• 용도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, (본인 발급용, 대리인 발급용 불가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불가
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 포함)		•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 발급
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 포함)		•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 발급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※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(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)
추가 사항	복무 확인서	본인	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(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)
	주민등록표등본(전체 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등 "전체포함" 발급
	전세 피해자 확인 서류	본인 또는 세대원	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(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)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받기 위한 경우
	기존주택 처분조건 서약서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 ※ 기존주택에 비치 ※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(특별공급 중 출산 특례에 해당하는 자)
	단신부임	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	•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: 파견 및 출장명령서 •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: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인정 불가 ※ 해외에서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
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•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※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로 설정(주민센터 또는 정부24)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 및 직계비속	•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•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
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여성가족부의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
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)*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공개 "상세"발급
		직계비속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(임신증명서류는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*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예정일,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)
	출산이행각서		• 임신의 경우 (건본주택 비치)
	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 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직계 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임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의 주소변동사항(3년 이상) 및 세대주 성명,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대리인	위임장	본인	• 접수 장소 비치(신청자 인감도장 날인)
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• 용도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(본인 발급용, 대리인 발급용 불가) 단,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 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대리인 신분증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(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)
	대리인 인장	대리인	• 서명 가능

※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/ 상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입주자모집공고가 우선 합니다